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3. 8 선고 2022가단21206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최유덕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한주

변 론 종 결 2023. 2. 8.

판 결 선 고 2023. 3.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2021. 11. 2.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11. 3. 접수 제659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피고와 소외 C은 2021. 11.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11. 3. 접수 제6596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위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별도의 민사 사건(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가단50191호)에서 위 C이 해제 주장을 하였고, 위 C의 해제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나. 그렇다면 원고는 C에게 기지급한 매매대금 중 잔금 867,15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진다.

다. 한편 위 C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음에도 C이 2021. 11. 2.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C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따라서 C과 피고가 체결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우선 원고가 C에게 피보전채권, 즉 기지급한 매매대금 중 잔금 867,15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C에게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을 가진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관련 민사 사건 1심과 항소심에서 C을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로 총

963,51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11. 19. 선고 2018가합5061 판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2. 18. 선고 2020나2194 판결 참조].

나. 이와 같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창현

별지